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
----------	----

제출연월일 : 2006. 9.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함.(안 제2조, 제4조제1항)
- 나.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 함.(안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 (1)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
 - (2)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변경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준용)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
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
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u>지방자치법</u>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u>지방자치법시행령</u> 제15조의2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4조(<u>지방자치법시행령</u> 제15조 준용)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 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p>	<p>제1조(목적)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 「<u>지방자치법</u>」----- ----- ----- 「<u>지방자치법</u> 시행령」 제15조의3----- ----- ----- ----- ----- ----- ----- -----</p> <p>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4조(「<u>지방자치법</u> 시행령」 제15조 준용)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 -----</p>

<p>한 금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p> <p>3. (생략)</p> <p>제9조(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의 구성) 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u>다음 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중 교육감이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제12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u>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u>의정활동비</u>----- ----- 2 ----- ----- <u>의정활동비</u>----- ----- -----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u>----- -----</p>
--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

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5,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